

高等教育法案

議案 番號	561
----------	-----

提出年月日：1997. 6. .
提出者：政 府

提案理由

현행 教育法은 1949年 12月 31日 制定·公布된 이래 38回の 部分改正으로 인하여 그 體系와 내용의 一貫性이 부족하고, 현재의 教育與 件에 부합하지 못하며, 各級學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問題點이 있어 教育法의 전면적인 改正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확정·발표된 教育改革方案에서 高等教育分野에 관하여 國民에게 高等教育을 받을 기회를 擴大하고 大學의 自律性伸長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指向하는 많은 方案들이 발표·施行됨에 따라 이의 制度化를 위한 法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高等教育法을 制定하는 것으로서, 이 法은 教育改革 方案으로 제시되었던 大學自體評價의 실시근거 마련, 產業界와의 連繫強化, 學點認定의 擴大 및 授業方法의 多樣化 등을 정함으로써 教育改革方案의 制度化를 위한 法的 基盤을 마련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종래의 開放大學을 産業大學으로, 放送通信大學을 放送大學·通信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案 第2條).
- 나. 學校의 長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學校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함(案 第6條).
- 다. 高等教育機關의 질적 수준을 提高하기 위하여 自體評價와 教育部長官의 學校에 대한 評價의 실시근거를 마련함(案 第7條).
- 라. 學生의 自治活動을 보장하는 한편,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때에는 意見 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치도록 함(案 第13條 및 第14條).
- 마. 高等教育機關의 敎員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時間講師 등을 둘 수 있도록 함(案 第17條 및 第18條).
- 바. 高等教育機關의 授業과 産業現場과의 連繫를 強化하기 위하여 現場實習 授業 및 實習學期制를 導入하고, 國內·外의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을 당해 學校에서의 學點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案 第23條 및 第24條).
- 사.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大學·産業大學 또는 放送·通信大學에 編入學할 수 있도록 함(案 第52條).

아. 大學 및 專門大學에 준하는 各種學校중 教育部長官의 學力認定의 지정
을 받은 各種學校의 卒業者에 대하여도 學位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案
第60條).

高等教育法案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高等教育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學校의 종류) 高等教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

1. 大學
2. 産業大學
3. 教育大學
4. 專門大學
5. 放送大學·通信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이하 “放送·通信大學”이라 한다)
6. 技術大學
7. 各種學校

第3條(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設立主體에 따라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學校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學校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學校法人이 設立·경영하는 學校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第4條(學校의 設立등) ①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②國家의 者가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公·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指導·監督) 學校는 教育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6條(學校規則) ①學校의 長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

②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學校 評價) ①學校는 당해 學校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自體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教育部長官은 學校에 대한 評價를 실시할 수 있으며, 評價의 대상·기준·節次 및 評價結果의 公開 등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教育財政)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가 그 目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財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源을 지원·보조하는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學校는 教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 및 決算을 公開하여야 한다.

第9條(實驗實習費등의 지급) ①國家는 學術의 振興과 教育의 研究를 助長하기 위하여 實驗實習費 또는 研究助成費의 지급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學問研究의 振興을 위하여 獎學金의 지급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

여야 한다.

第10條(學校間 상호협조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상호간의 敎員交流와 研究協力の 活性化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11條(學校協議體)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 등은 高等教育의 발전을 위하여 각 學校의 代表者로 구성하는 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2條(授業料등)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와 기타 納付金を 받을 수 있다.

②授業料 기타 納付金の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部令으로 정한다.

第 2 章 學 生 과 敎 職 員

第 1 節 學 生

第13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獎·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第14條(學生의 懲戒) ①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과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 懲戒할 수 있다.

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에게 意見 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第 2 節 敎 職 員

第15條(敎職員의 구분)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 學長을 두며, 技術大學 및 專門大學에는 學長을 둔다.

②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 및 學長외에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로 구분한다.

③學校에는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과 助敎를 둔다.

④各種學敎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職員을 둔다.

第16條(敎職員의 임무) ①總長 또는 學長은 校務를 統割하고, 소속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

②敎員은 學生을 敎育·指導하고 學問을 研究하되, 學問研究만을 全擔할 수 있다.

③行政職員등 職員은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④助敎는 敎育·研究 및 學事に 관한 事務를 보조한다.

第17條(敎員등의 資格基準) 敎員 및 助敎가 될 수 있는 者の 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兼任敎員등)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5條第2項의 敎員외에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時間講師 등을 두어 敎育 또는 研究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第 3 章 學 校

第 1 節 通 則

第19條(學校의 명칭) ①學校의 명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은 그 명칭중 大學을 각각 大學校로 할 수 있다.

第20條(學校의 組織) ①學校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②學校의 組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 및 學則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및 學則으로 정하며, 私立學校의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 및 學則으로 정한다

第21條(學年度등) ①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②學期·授業日數 및 休業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

第22條(教育課程의 운영) ①學校는 學則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教科의 履修는 評點 및 學點制 등에 의할 수 있다.

第23條(授業등) ①學校의 授業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晝間授業·夜間授業·季節授業·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및 現場實習授業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學校는 學生의 現場適應力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第24條(學點의 인정) 學校는 國內·外の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으로 인정할 수 있다.

第25條(大學評議員會) ①學校의 教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學校(技術大學 및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에 大學評議員會를 둔다.

②大學評議員會의 構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分校)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國內·外에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第27條(研究施設등) 學校에는 研究所등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機關을 附設할 수 있다.

第28條(公開講座) 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외의 者를 대상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둘 수 있다.

第29條(外國博士學位의 申告) 外國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 2 節 大 學 及 產 業 大 學

第 1 款 大 學

第30條(目的) 大學은 人格을 도야하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며, 國家와 人類社會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1條(大學院) ①大學(產業大學·教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大學院을 둘 수 있다.

②大學院에 學位課程외에 필요에 따라 學位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研究課程을 둘 수 있다.

④大學에 두는 大學院의 종류, 學位課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大學院大學) 특정한 분야의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學院만을 두는 大學(이하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第33條(授業年限) ①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4年 내지 6年으로 한다.

②大學院의 授業年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碩士學位課程 및 博士學位課程 : 각각 2年이상
2.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の 課程이 統合된 課程 : 4年이상

③學則이 정하는 學點이상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年限을 단축할 수 있다.

第34條(學生의 定員) 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및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의 學生定員에 관한 사항은 關係法令의 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

第35條(入學資格) 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②大學院의 碩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の 課程이 統合된 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學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③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第36條(學生의 選拔方法) 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 및 專門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長은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에 의하여 入學을 許可할 學生을 選拔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銓衡 및 特別銓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學位의 수여) 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

②大學院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해당 課程의 碩士學位 또는 博士學位를 수여한다.

③碩士學位 및 博士學位の 課程이 統合된 課程을 中途에 退學하는 者로서 學則이 정하는 碩士學位の 수여기준을 충족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④博士學位課程이 있는 大學院을 둔 學校에서는 名譽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⑤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位를 수여한 學校의 長은 教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部에 이를 登錄하여야 한다.

第38條(時間制 登錄) ①大學(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한다)은 第35條第1項의 入學資格이 있는 者에게 時間制로 登錄하여 당해 大學의 授業을 받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時間制로 登錄할 수 있는 者의 選拔方法 및 登錄人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 款 産 業 大 學

第39條(目的) 産業大學은 産業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學術 또는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研究와 鍊磨를 위한 教育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者에게 高等教育의 기회를 제공하여 國家와 社會의 발전에 기여할 産業人力を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0條(授業年限) 産業大學의 授業年限 및 在學年限은 각각 이를 制限하지 아니한다.

第41條(教科目履修의 인정) 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學校·研究機關 또는 産業體 등에서 행한 教育·研究 또는 實習 등을 특정한 教科目的 履修로 인정할 수 있다.

第42條(産業體 委託教育) ①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産業體(産業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 포함한다)에 委託하여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 委託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節 教 育 大 學 等

第43條(目的) ①教育大學은 初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大學의 師範大學(이하 “師範大學”이라 한다)은 中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③大學에는 특별한 需要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敎育科(이하 “敎育科”라 한다)를 둘 수 있다.

第44條(敎育大學의 設立 및 授業年限) ①敎育大學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다.

②敎育大學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第45條(綜合敎員養成大學)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需要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目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大學(이하 “綜合敎員養成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中 敎育大學에 관한 規定은 綜合敎員養成大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6條(目標) 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 및 敎育科의 敎育은 第43條 및 第45條第1項의 設立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在學生이 다음 各號의 目標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